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89
----------	------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임이자 · 권명호 · 태영호  
김형동 · 서일준 · 김영식  
한무경 · 金炳旭 · 김성원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전국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51기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들이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 실정임.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도 주민 민원을 우려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허가(건축허가/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함. 다만 해당 설치계획이 타당하게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 승인 시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토록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부장관이 지역 배분, 수소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토록 함(안 제58조의8 신설).
- 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승인토록 함(안 제58조의9 신설).
- 다. 환경부장관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설치계획은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적용(안 제58조의10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중전의 다목) 중 “태양광, 수소연료”를 “태양광”으로 한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8(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9(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②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0(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9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②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변경허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

려는 자는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인·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은 설치계획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

간이 지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1. (생략)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나. (생략)</p> <p>&lt;신 설&gt;</p> <p>다. 그 밖에 <u>태양광, 수소연료</u></p>	<p>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u> 라. -----<u>태양광</u>-----</p>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  
설

3. ~ 6. (생략)

④ ~ ⑱ (생략)

<신설>

-----  
-----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⑱ (현행과 같음)

제58조의8(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

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  
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  
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  
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9(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신 설>

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0(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9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

<신 설>

당 설치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②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변경허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